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9년 9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사항의 반영 및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건축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건축위원회 연임규정 정비 (안 제6조)

- 건축법에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 기준에 맞게 위원 임기 규정 정비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농막 포함 (안 제21조)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규정

○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업무범위 및 대행수수료 기준 정비 (안 제22조, 안제23조, 안 별표3)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용도변경신고에 대한 현장조사업무를 포함하고 대행수수료 기준 정비

○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포함 (안 제35조)

-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을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규정

○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정비 (안 제36조)

- 건축법의 개정으로 이행강제금의 감경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과횟수(5회이내) 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나. 예산관련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예고기간 : 2019.8.8.~2019.8.28.)

라. 성별영향평가분석 : 개선사항 없음 [가족지원과-30516(2019.7.30.)]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기획감사실-7558(2019.7.29.)]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컨테이너 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막 제22조제1항제2호 중 “용도변경허가 전”을 “용도변경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을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성주지역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을”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고령·성주 지역건축사회의”를 “성주지역 건축사회의”로 한다.
제34조의2 제1항 중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를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를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태양광 발전설비·화물인양기”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85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만,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총5회로 한다”는 삭제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제23조 관련)

규모(신청 연면적의 합계)	검사대행 소요시간
200제곱미터 미만	3
20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4
660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5
2천제곱미터 이상 4천제곱미터 미만	6
4천제곱미터 이상 6천제곱미터 미만	7
6천제곱미터 이상 8천제곱미터 미만	8
8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3
3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16
5만제곱미터 이상 7만제곱미터 미만	19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3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	27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30
30만제곱미터 이상	34

※ 산출방법

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 적용 (매년 1월 1일 기준, 천원 미만 절사)

○ 대행 수수료 = [직접인건비(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시간당 기술사 노임단가 × 소요시간)+ 직접경비(직접인건비×10%) + 제경비(직접인건비×110%)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 부가가치세(10%)] × 현장조사비율

나. 영[별표1]제18호 창고시설(농·어업용, 축산업용 창고로 한정한다),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가목은 제외한다)은 대행 수수료의 60% 적용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 ④ (생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가설건축물)	제21조(가설건축물)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②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8. 컨테이너 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막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다만 건축사가 설계도서	2 . ----------용도변경 전----

현 행	개 정 안
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성주지역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을 ----------.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고령·성주 지역건축사회의 내부 규정 제·개정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성주지역 건축사회의 ----------.
제34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제34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제5호에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제35조(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	② ----------

현 행	개 정 안
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30톤 이상인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태양광 발전설비·화물인양기----------.
제3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3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① ------60제곱미터----------.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 제3항에----------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총5회로 한다.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서 삭제>
【별표 3】	【별표 3】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

현 행	개 정 안
료 (제23조 관련)	료 (제23조 관련)

규모(신청 연면적의 합계)	검사대행 소요시간
200제곱미터 미만	2
20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3
660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4
2천제곱미터 이상 4천제곱미터 미만	5
4천제곱미터 이상 6천제곱미터 미만	6
6천제곱미터 이상 8천제곱미터 미만	8
8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3
3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16
5만제곱미터 이상 7만제곱미터 미만	19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3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	27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30
30만제곱미터 이상	34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 적용 (매년 1월 1일 기준, 천원 미만 절사)

○ 대행 수수료 = [직접인건비(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시간당 기술사 노임단가 × 소요시간)+ 직접경비(직접

규모(신청 연면적의 합계)	검사대행 소요시간
200제곱미터 미만	3
20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4
660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5
2천제곱미터 이상 4천제곱미터 미만	6
4천제곱미터 이상 6천제곱미터 미만	7
6천제곱미터 이상 8천제곱미터 미만	8
8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3
3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16
5만제곱미터 이상 7만제곱미터 미만	19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3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	27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30
30만제곱미터 이상	34

※ 산출방법

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 적용 (매년 1월 1일 기준, 천원 미만 절사)

○ 대행 수수료 = [직접인건비(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시간당 기술사 노임단가 × 소요시간)+ 직접경비(직접

현 행	개 정 안
인건비×10%) + 제경비(직접인건비×110%)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 부가가치세(10%)] × 현장조사비율	인건비×10%) + 제경비(직접인건비×110%)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 부가가치세(10%)] × 현장조사비율 나. 영[별표1]제18호 창고시설(농·어업용, 축산업용 창고로 한정한다),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가목은 제외한다)은 대행수수료의 60% 적용